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5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명	2 명
재적임원	8 명	2 명
참석임원	6 명	2 명

1. 일 시: 2025년 10월 29일(수) 11:00
(회의소집 통보일: 2025년 10월 21일)

2. 장 소: 광운대학교 화도관 202-1호

3. 참석임원

- 이사(6명):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이종민 이사, 김영만 이사, 이항철 이사, 류희근 이사 (불참: 김기영 이사, 배일환 이사)
- 감사(2명): 왕영호 감사, 신혜성 감사 (불참: 없음)

4. 안 건

-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 ☐ 제2025-27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 제2025-28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 ☐ 제2025-29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 제2025-30호: 법인 및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 ☐ 제2025-31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사업 보고
- ☐ 제2025-32호: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 제2025-33호: 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건
- ☐ 제2025-34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에 관한 건
- ☐ 제2025-35호: 광운초등학교 202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공개전형 계획에 관한 건
- ☐ 제2025-36호: 남대문중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 제2025-37호: 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간인			
----	--	--	--

5. 회의내용

(광운대학교 윤도영 총장,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홍배 교무처장 입실함)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이사 6명, 감사 2명)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 전, 윤도영 총장에게 대학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자, 윤도영 총장은 전임교원 채용 계획, 직원 채용 계획, 가칭 광운 AI·AX 미래전략위원회 발족 준비 등에 대하여 보고하다.

(광운대학교 윤도영 총장,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홍배 교무처장 퇴실함)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전차 이사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보고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5-27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27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류희근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1]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1: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제2025-28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2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김영만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

간인			
----	---	---	---

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2]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2: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제2025-29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29호 안건을 상정하고, 2026년 1월 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이사 1명과 이사 3명에 대한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며, 김기영 이사는 임기 만료 후 이사직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설명하다.

1)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개방이사 선임을 위하여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2026. 1. 6.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이사 선임(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종민 이사와 왕영호 감사에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심의 과정 및 추천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자, 이종민 이사와 왕영호 감사가 각각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이종민 이사는 추천된 복수 후보자 중 조범구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개방이사 선임을 추천하다.

조선영 의장은 류희근 이사의 동의와 김영만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개방이사 김영만의 후임으로 조범구를 5년 임기의 개방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2) 조선영 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본인의 이사 연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향철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지명한 후 퇴실하다.

(조선영 이사장 퇴실함)

이향철 임시의장은 조선영 이사의 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조선영 이사 선임(중임)에 찬성하다.

이향철 임시의장은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조선영 이사장을 제외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조선영 이사가 5년 임기의 이사로 선임(중임)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인			
----	---	---	---

3) 제15대 이사장 선임에 관한 건

이항철 임시의장은 조선영 이사 선임(중임)이 의결됨에 따라 학교법인 광운학원 제15대 이사장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조선영 이사를 상근 이사장으로 재추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이종민 이사는 조선영 이사장이 법인과 학교의 발전 및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점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이사장(상근 이사장) 재추대에 동의하고, 이종수 이사가 이에 재청하다.

이항철 임시의장은 조선영 이사장을 제외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소속	직위	성명	내용	임기	비고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 겸 이사장	조선영	제15대 이사장 선임 (상근 이사장)	2026. 1. 7. ~2031. 1. 6. (이사 재임기간)	

4) 상근임원 보수 책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이사장 입실함)

조선영 의장은 이사 선임(중임) 및 이사장 재추대에 대하여 승낙하고, 수락 인사말씀을 하다.

5) 이종수 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

(이종수 이사 퇴실함)

조선영 의장은 이종수 이사의 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종수 이사 선임(중임)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항철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종수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이종수 이사가 5년 임기의 이사(교육이사)로 선임(중임)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인			
----	---	---	---

(이종수 이사 입실함)

이종수 이사는 이사 선임(중임)에 대하여 승낙하고, 수락 인사말씀을 하다.

6) 이종민 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

(이종민 이사 퇴실함)

조선영 의장은 이종민 이사의 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종민 이사 선임(중임)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항철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종민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이종민 이사가 5년 임기의 이사로 선임(중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종민 이사 입실함)

이종민 이사는 이사 선임(중임)에 대하여 승낙하고, 수락 인사말씀을 하다.

■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 의결사항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 기	비고
이사	조선영		2026. 1. 7. ~ 2031. 1. 6.(5년)	중임, 이사장(상근임원)
이사	이종수		2026. 1. 7. ~ 2031. 1. 6.(5년)	중임, 교육이사
이사	이종민		2026. 1. 7. ~ 2031. 1. 6.(5년)	중임
이사	조범구		2026. 1. 7. ~ 2031. 1. 6.(5년)	신임, 개방이사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김도봉 교장, 모상범 교감, 정형규 행정실장 입실함)

□ 제2025-30호: 법인 및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0호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정형규 행정실장이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응하다.

조선영 의장은 김영만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학교명	2025학년도 경정예산액(원)	2025학년도 기정예산액(원)	증감액(원)	비고
법인 일반업무회계	2,224,757,504	1,793,546,000	431,211,504	제1차 추경
법인 수익사업회계	897,819,072	955,975,000	-58,155,928	제1차 추경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1,259,294,000	7,656,471,000	3,602,823,000	제1차 추경

간인			
----	---	---	---

□ 제2025-31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사업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제2025-31호 안건을 상정하고 상정하고 모상범 교감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모상범 교감은 가천대학교와의 업무 협약 건, 아이스하키부 창단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김영만 이사는 광운대학교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하고, 아울러 e스포츠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e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보고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김도봉 교장, 모상범 교감, 정형규 행정실장 퇴실함)

(광운대학교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홍배 교무처장 입실함)

□ 제2025-32호: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2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대학원 명칭 변경에 신중함을 강조하며, 행정학과 교수진 등 유관 구성원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 필요성을 지적하다. 또한, 현재 개편안은 학생 수요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이향철 이사는 대학원 명칭 변경이 학교의 전통과 구성원(동문)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다.

왕영호 감사는 대학원 명칭 변경으로 행정학과와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전공 개편 시 중요 분야인 ‘청소년’이 제외된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이향철 이사는 학칙 제1조의 “‘참·빛’ 정신” 문구가 설립자의 교육이념과 무관하게 삽입된 점과, 대학 및 법인 홈페이지 간 교육이념 기술 불일치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조선영 의장은 해당 문제를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대학 측에 학교 곳곳에 다르게 표기 및 홍보되는 창학정신과 교육이념 부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다.

조선영 의장은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중 ‘상당복지정책대학원 명칭 및 학과 개편(안)’은 학교의 전통과 유관 학과(행정학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학생 수요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6명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간인			
----	---	---	---

선포하고, 이어 그 외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부분가결	2025. 10. 29.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부결	-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5. 10. 29.
교원 특별채용 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5. 10. 29.

※ 붙임3: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의결사항

□ 제2025-33호: 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3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수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종수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4]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4: 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수급 계획(안)

(광운대학교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홍배 교무처장 퇴실함)

□ 제2025-34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4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안) 및 교장 임용(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김영만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5]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5: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사항

(광운초등학교 한성희 교장, 류경란 교감 입실함)

간인			
----	---	---	---

□ 제2025-35호: 광운초등학교 202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공개전형 계획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5호 안건을 상정하고 류경란 교감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류경란 교감은 광운초등학교 202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공개전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류희근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광운초등학교 한성희 교장, 류경란 교감 퇴실함)

□ 제2025-36호: 남대문중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5-36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남대문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김영만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남대문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5. 10. 30.

□ 제2025-37호: 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5-29호 중 상근임원 보수 책정(안), 제2025-37호 및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사회 회의록 간인 대표자 : 조선영 이사장, 이향철 이사, 류희근 이사
(2025학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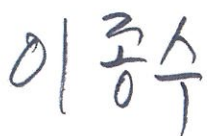
6.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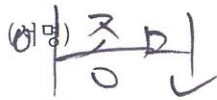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3시 5분 폐회를 선언하다.

간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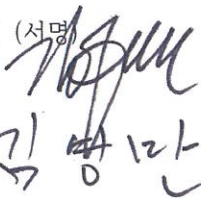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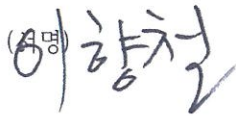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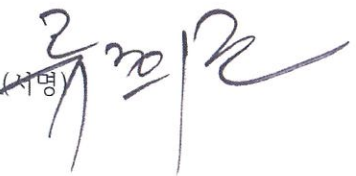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민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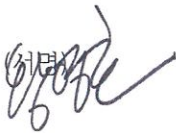
이 사 김 기 영 (서명) 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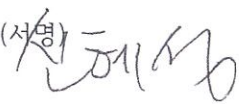
이 사 김 영 만 (서명) 
김영만

이 사 배 일 환 (서명) 불참

이 사 이 향 철 (서명) 

이 사 류 희 근 (서명) 

감 사 왕 영 호 (서명) 

감 사 신 혜 성 (서명) 

2025. 10. 29.

간인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2.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 -----. 1. --- 7명-----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② (생략) <u><신설></u>	제32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u> <u>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u> <u>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u> <u>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u> <u>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
제39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및 부속기관의 장 등 보직은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9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u>교원인사위원회</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보하며, 그 임기는 1년으</u>

간인			
----	---	---	---

⑦ 대학의 장이 제2항의 교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 ⑪ (생략)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법인사무처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86조(총장 등) ①·② (생략)

③ 대학교에 교무·행정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학생성공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각 부총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특임교수로 보한다.

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 교원 임용을 제청할 ----- 심의를 거쳐야 -----.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 처리하기 -----.

② ----- 법인 또는 해당 학교의 소속 일반직원 -----.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 ----- 처리하기 -----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 일반직원-----.

② -----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원-----.

③ -----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총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교수 이상의 교원 -----.

간인			
----	---	---	---

④·⑤ (생 략)

제86조의2(학장, 대학원장) ① (생 략)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저명인사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각 대학에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제8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대외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정보통신처를 둔다.

② 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각 처에는 단, 센터, 팀, 실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 (생 략)

제87조의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학장, 대학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제87조(하부조직) ① -----

-- 정보통신처 및 총장 직속 기구-----
-----.

② ----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
----- 일반직원-----.

③ -----
-----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원-----
-----.

④ ----- 사업단, 센터, 팀 및 실을 -----
----- 사업단장은 --- 이상의 -----
----- 일반직원으로, -----
----- 4급 ---- 일반직원으로, 팀장 및 실장----- 일반직원 ----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간인			
----	---	---	---

② 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88조(부속시설) ① (생략)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전임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생략)

제88조의2(산학협력단) ① (생략)

②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97조(정원) ①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각 직급별 세부 정원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② ---- 조교수 이상의 -----
----- 일반직원-----.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부속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 일반직원-----.

③ -----
----- 일반직원-----.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교수 -----
-- 일반직원-----.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정원) ① -----
----- 별표 1과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7일부터,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간인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사회 심의·결정사항) 정관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이사회 심의·결정사항) ----- ----- -----.
1. 제1호의 ‘ <u>재산</u> ’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 <u>관리</u> ’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1. ----- “ <u>재산</u> ”----- ----- “ <u>관리</u> ”----- ----- -----.
2. 제6호의 ‘ <u>법인</u> 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u>중요사항</u>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학교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규정의 <u>제정 및 개폐</u> 에 관한 사항(학교의 기구 및 직제, 교직원의 인사, 복무, 회계, 보수, 재산관리 등) 다. ~ 마. (생략)	2. ----- “ <u>법인</u> ----- - <u>중요사항</u>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제정·개정 및 폐지</u> ----- ----- ----- 다. ~ 마. (현행과 같음)
3. 제7호의 ‘ <u>수익사업에 관한 사항</u> ’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개시와 폐업에 관한 사항	3. ----- “ <u>수익사업에 관한 사항</u> ”----- ----- -----
제8조(위원회) 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u>기획, 연구,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u>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① ----- ----- <u>처리하기 위하여</u>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간인			
----	---	---	---

제10조(대학교의 교원임용) ① (생략)

② 대학교의 총장 외 교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때 총장은 임용 제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학교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및 부속기관장 등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① (생략)

② 초·중등학교의 교원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초·중·고등학교의 교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부장교사의 보직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며, 부장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학교의 교원임용)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1조(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초·중등학교의 교원 임용 시,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제청이 있을 후,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건학이념 구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에 그 검증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초·중등학교의 교감 임용은 정관 제39조의2제1항 및 정관 시행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초·중등학교의 부장 보직은 학교장의 제

간인			
----	---	---	---

제12조(일반직원 임용) ① <u>각급학교 일반직원</u> (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생략) 제13조(교직원의 인사교류) ① <u>중·고등학교</u> 교원은 학교 간 인사교류(전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u>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제12조(일반직원 임용) ① <u>정관 제80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 이사장은 건학이념 구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그 검증을 위임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직원의 인사교류) ① <u>중등학교</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간인			
----	---	---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의결사항

1. 본칙 심의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이사회 의결 내용	비고
제3조제2호, 제5조 [별표 2], 제21조제1항제6호, 제22조제6호, 제24조제6호,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제6호	상담복지정책대학원 및 상담심리치 료학과 명칭 변경 관련	부결	현행 유지
제5조 [별표 2]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전공명칭 변경 관련	가결	

2. 부칙 심의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이사회 의결 내용	비고
제1조	시행일	가결	
제2조제1항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관련 경과조치	부결 및 삭제	
제2조제2항	학과/전공명칭 변경(별표 2) 관련 경과조치	부결 및 삭제	
제2조제3항	창업컨설팅전공 → AI경영컨설팅전공 관련 경과조치	제2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가결	항 번호 변경
제2조제4항	경영정보전공 → AI빅데이터경영전공 관련 경과조치	제2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가결	항 번호 변경

간인			
----	---	---	---

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수급 계획(안)

□ 총원 인원(안) : 총 22명(일반채용 17명, 특별채용 5명)

일반채용	특별채용
일반전임 : 13명 특별전임 : 4명	일반전임 : 5명

□ 각 직종별 초빙 인원(안)

가. 일반채용 일반전임 : 13명

소속	인원 (명)	분야 및 우선순위	비고 (우대사항)
전자공학과	1	통신 및 신호처리 전 분야	
	1	전자공학 전 분야(반도체 회로설계 및 소자 분야 우대)	
전기공학과	1	전기공학 전 분야 (모터 제어 분야 우대, 전기자동차, 드론, 로봇, 가전, 산업기계 등 모터 제어 시스템 개발 경험 우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1	반도체 전 분야(디지털 회로설계, 아날로그 회로설계, 패키징 분야 우대)	
로봇학부	1	피지컬 AI 또는 로봇 전 분야	
컴퓨터정보공학부	1	컴퓨터하드웨어/아키텍처/임베디드시스템/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소프트웨어학부	1	소프트웨어 전 분야	
정보융합학부	1	인공지능응용 전 분야 (AI+X · 교통/자율주행 · 헬스케어 · 스마트제조 등 AI 전 분야)	(이공계 박사학위 필수)
화학공학과	1	이동현상 분야	
화학과	1	AI첨단 재료·물리화학 분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	AI 미디어 연구 분야	
법학부	1	민법 분야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	경영학전공 분야(회계 및 생산계량 분야 우대)	
합 계	13		

※ 공통 자격 : 영어강의 가능자(임용 후 영어강의 의무 조항 부과)

간인			
----	---	---	---

나. 일반채용 특별전임 : 4명

소속	인원 (명)	트랙	분야	비고
게임콘텐츠학과	1	교육트랙A유형	게임학이론 및 게임디자인 분야	
건설법무대학원	1	교육트랙A유형	건설사법 분야	
교육대학원	1	교육트랙A유형	언어병리학(또는 언어재활) 분야	
스마트융합대학원	1	교육트랙A유형	호텔외식경영학 분야	
합 계	4			

다. 특별채용 일반전임 : 5명

소속	인원(명)	비고
전자정보공과대학	5	
인공지능융합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법학대학		
경영대학		
합 계	5	

□ 총원 일정(안) : 생략

간인			
----	---	---	---

[붙임5]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사항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학교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일자	비고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감	모상범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장	2026.09.01.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임용사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감	모상범		임. 교장 임기: 2026.09.01. -2029.08.31.(3년)	2026.09.01.	조건부 임용 ^(주1)

(주1) 2026년 8월 31까지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임용

간인			
----	---	---	---